

# 인증 대폭 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 지원

인증제도 합리화 및 신설인증 억제를 위한 「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」 발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및 인증 신설 억제방안이 담긴 「기술규제 사전·사후 검토 체계 개선방향」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.

\* 現 257개 법정인증 운영 중이며, 매년 증가 추세 (186개/19년 → 222개/22년 → 257개/24년)

본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·폐합 유도를 위한 ‘3대 검토 원칙\*’을 제시하고,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‘집중 검토 계획\*\*’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.

- \* ① 시행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(정책목적 달성, 수요 부족) 폐지 검토
- ② 국민안전, 환경보호 등 공공이익과 무관한 단순 홍보용 목적의 제도는 폐지 검토
- ③ 제품, 서비스 등의 품질과 관련된 인증은 KS인증으로 통합 검토

\*\* '25~'27년 간 246개 인증제도 적절성 검토, 20여 개 '집중 검토'

또한,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·고시 제·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\*하며, 각 부처가 자체 검토\*\*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제시하였다.

\* 법령·고시로 기술규제를 신설·강화할 경우 「기술규제 영향평가」 실시 중

\*\* 신설·강화 규제의 필요성·적절성에 대해 자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중

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, 기술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·사후 심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.

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“기술규제가 「Better Regulation」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·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하여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술규제대응국	책임자	과 장	김태완 (043-870-5550)
	기술규제조정과	담당자	연구관	신명철 (043-870-5559)

## ① 기술규제 영향평가 제도(사전적 관리)

-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술기준, 인증 등 기술 규제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기술규제 영향평가 도입('13.1.)
  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제·개정 법령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규제심사 제도의 일부로써 운영 중
- 정부 법령(고시 포함) 중 신설·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타당성,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과도·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 차단
  - 국가표준, 안전기준 및 적합성평가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표원에 「기술규제개혁작업단」을 설치·운영키로 결정
    - \* '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' 개정 (총리 훈령, '12.12.)을 통해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산업부에 설치
    - \*\* (법적근거)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7조

## ② 3년 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(사후적 관리)

- 유사·중복, 불합리한 인증, 시험, 검사 제도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적합성평가 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·검토하는 제도
  - \* 관계부처 합동 「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」 마련(규제개혁위원회 보고, '14.8월)
  - \*\* (법적근거)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
    - 제도 소관부처의 자체검토서를 기반으로 국표원이 사전검토하여 제도별 존속·개선·통합·폐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
    - 각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도별 개선방안(개선·통합·폐지)을 이행